

## 『하도급협력대금 통장』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1.3.25 현재, 세전, 연%)

구분	내용	
상품특징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또는 사업의 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이체 시스템 전용통장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기업자유예금)	
가입대상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세기본법』 제 13조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포함	
기본금리	연 0.1%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 1588-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구성	<p>이 예금은 하도급시스템<sup>(주1)</sup>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른 특정계좌<sup>(주2)</sup>와 세트(전부 또는 일부)하여 구성됩니다.</p> <p>(주1) 하도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클린 PAY 공공, 클린 PAY 민간, 노무비닷컴, 상생결제노무비등</p> <p>(주2) 특정계좌:【하도급협력대금일반통장】, 【하도급협력대금통장_고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통장_선금관리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노무비계좌】로 구분</p>
출금제한	<p>① 이 예금의 출금은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 자동화기기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하도급협력대금일반통장】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p> <p>② 예외적으로 개별하도급시스템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발주사(원도급사)와의 사전협의를 의해 대출제비용(수수료, 인지세 등)의 출금은 허용합니다.</p>
이자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전날까지</li> <li>-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 월의 제 3 금요일</li> <li>-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 익일</li> </ul> </li> </ul>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협력대금 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하도급협력대금 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도급협력대금 통장」
- 상품특징 :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또는 사업의 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이체 시스템 전용통장

###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1. 03.25 현재, 세전, 연%)

가입 대상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세기본법』 제 13 조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포함		
상품 유형	기업자유예금		
거래 방법	■ 신규 : 영업점		
가입 금액	제한없음	가입 한도	제한없음
기본 금리	연 0.1% (※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자유예금 고시금리)		
통장의 구성	이 예금은 하도급시스템 <sup>(주1)</sup>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른 특정계좌 <sup>(주2)</sup> 와 세트(전부 또는 일부)하여 구성됩니다. (주1) 하도급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클린 PAY 공공, 클린 PAY 민간, 노무비닷컴, 상생결제노무비등 (주2) 특정계좌 : 【하도급협력대금일반통장】, 【하도급협력대금통장_고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통장_선금관리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노무비계좌】로 구분		
출금 제한	① 이 예금의 출금은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 자동화기기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하도급협력대금일반통장】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② 예외적으로 개별하도급시스템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발주사(원도급사)와의 사전협의에 의해 대출제비용(수수료, 인지세 등)의 출금은 허용합니다.		
계약해지 방법	이 예금의 해지는 잔액이 일십만원(100,000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합니다.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능합니다		
통장 발행	이 예금은 통장미발행이 가능합니다.		

거래 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합니다
기타 제한사항	자동이체 서비스등록 및 다른 예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li> <li>●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li> </ul>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해당없음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없음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li> </ul>
예금자보호여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p>해당</p>  </div> <div>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p> </div> </div>

###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을 지급할 경우 먼저 입금한 건부터 지급 처리됩니다. (선입선출법)
- 적용이자율이 변경시,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시스템 이용 관련 수수료는 당행이체 수수료와 타행이체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는 대금이체시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금 및 지급된 거래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고객센터: 1588-0800, 클린 PAY 공공/민간 : 070-5224-0250,  
노무비닷컴 : 02-788-9091~2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섹션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0,1)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